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14.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4. 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8. 4. 4
- 다.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 4. 14)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 2)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안 제3조)
- 3)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안 제4조)
- 4)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 5)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5.11 법률 제8423호)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장학기금은 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기타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구민으로 구성하며, 셋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7.7.20 법률 제8540호)등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변화된 교육여건과 환경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수확경시대회 개최, 영어캠프 실시, 상상플러스 과학탐험 및 학습캠프 운영 등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우수학생을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0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8조제1항은 각각 같은 조에 제1항 다음에 항이 없으므로 항이 삭제된 본문만 규정해야 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에 대한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2007.5.11 법률 제8423호)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구청장을 삭제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 정리가 필요함.

안 제7조에 위원장 직무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4조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